

부서 · 정책 · 단위 · 세부	2017	2018	증 감	예 산 과 목 및 내 역	(단위 : 천원)
				○ 개별형직위(임기제)(2명)	
				· 기본급	= 158,279
				- 4호	= 149,054
				· 가족수당	= 149,054
				- 배우자	= 1,653
				- 첫째 자녀	= 730
				- 둘째 자녀	= 375
				- 셋째 자녀	= 389
				- 기타가족	= 120
				· 자녀학비 보조수당	= 39
				- 고등학교	= 225
				· 정액급식비	= 225
				· 연가보상비	= 225
				○ 일반임기제(48명)	
				· 고용보험부담금	= 3,120
				○ 일반임기제(48명)	
				· 기본급	= 1,887
				- 가급	= 2,782,187
				- 나급	= 2,340
				- 다급	= 2,334,872
				- 라급	= 213,175
				· 초과근무수당	= 429,580
				· 가족수당	= 1,234,022
				- 배우자	= 458,095
				- 첫째 자녀	= 295,602
				- 둘째 자녀	= 39,631
				- 셋째 자녀	= 17,511
				- 기타가족	= 17,511
				· 자녀학비 보조수당	= 8,986
				- 고등학교	= 9,332
				· 정액급식비	= 2,880
				· 연가보상비	= 922
				○ 시간선택제임기제	
				· 기본급	= 5,381
				- 미급	= 5,381
				· 연가보상비	= 74,880
				· 정액급식비	= 31,821
				· 초과근무수당	= 338,574
				· 가족수당	= 244,151
				- 배우자	= 244,151
				- 첫째 자녀	= 244,151
				- 둘째 자녀	= 244,151
				- 셋째 자녀	= 244,151
				- 기타가족	= 244,151
				· 자녀학비 보조수당	= 244,151
				- 고등학교	= 244,151
				· 정액급식비	= 244,151
				· 연가보상비	= 244,151
				○ 시간선택제임기제	
				· 기본급	= 244,151
				- 미급	= 244,151

2-2

부서 · 정책 · 단위 · 세부	2017	2018	증 감	예산 과 목 및 내역	(단위 : 천원)
· 초과근무수당				51,518원*12월*30시간 =	18,547
· 가족수당				=	12,384
- 배우자				40,000원*15명*12월*0.76 =	5,472
- 첫째 자녀				20,000원*15명*12월*0.78 =	2,808
- 둘째 자녀				60,000원*15명*12월*0.27 =	2,916
- 셋째 자녀				100,000원*15명*12월*0.05 =	900
- 기타가족				20,000원*15명*12월*0.08 =	288
· 자녀학비보조수당				=	1,682
- 고등학교				467,080원*15명*4회*0.06 =	1,682
· 정액급식비				130,000원*15명*12월*60% =	14,040
· 연가보상비				20,345,917원*0.84*1/226*44시간*0.86 =	2,862
· 직급보조비				=	13,500
- 마급				125,000원*15명*12월*0.6 =	13,500
· 보험료				=	31,408
- 국민연금부담금				307,166,000원*4.5% =	13,823
- 건강보험부담금				307,166,000원*3.120% =	9,584
- 장기요양보험료				9,584,000원*6.55% =	628
- 고용보험부담금				307,166,000원*1.5% =	4,608
- 산재보험료				307,166,000원*0.9% =	2,765
○ 최우개선비(4급이하 2.6%)				85,256,000원 =	85,256
(202-101-03) 무기계약근로자보수				=	121,022
○ 공무직(2명)				=	117,955
· 기본급				2,652,710원*2명*12월 =	63,666
· 명절휴가비				2,652,710원*2명*1회 =	5,306
· 시간외근무수당				12,716원*2명*12월*30시간*150% =	13,734
· 휴일근무수당				152,590원*2명*12월*2일*150% =	10,987
· 연차유급휴가수당				101,730원*20명*2명 =	4,070
· 가족수당				=	1,653
- 배우자				40,000원*2명*12월*0.76 =	730
- 첫째 자녀				20,000원*2명*12월*0.78 =	375
- 둘째 자녀				60,000원*2명*12월*0.27 =	389
- 기타가족				20,000원*2명*12월*0.08 =	39
- 셋째이후 자녀 가산금				100,000원*2명*12월*0.05 =	120
· 자녀학비보조수당				=	3,027